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23· 8· 14 조례 제19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천시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이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시의 안전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 등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시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한다.

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제5조(임기) 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시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